

2016년 청년2부 총회

회 장 : 유은혜

부회장 : 최민영

총 무 : 송종원

서 기 : 김나래

회 계 : 윤민홍

회의관련 용어

<회의관련 용어>

- 1) 동의(動議) - 의안을 제출함
- 2) 동의(同意) - 의견을 같이함
- 3) 재청(再請) - 다른 사람의 동의에 찬성하여 거듭 청함
- 4) 가부(可否) 확인 - 표결하지 않고 전체의 찬성과 반대를 물어 결정
(보고받을 때 또는 전체의 의사가 거의 명백할 경우)
- 5) 표결(表決) - 찬반 또는 선택의 표수를 확인하여 결정
 - *거수 - 손을 들어서 결정(제시된 의안을 경정할 때)
 - *투표 - 투표용지에 기록(주로 임원 선거)

총회 회순

- 기도
- 회원호명
- 개회선언
- 회순통과
- 행사보고
- 회계보고
- 회칙수정
- 임원선거
- 신·구 임원 교체
- 안건토의
- 기도
- 폐회선언

회칙 (청년2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후암교회(이하 후암교회라 칭한다.) 청년2부라 한다.

제 2 조 (소재) 본 회의 후암교회 교육위원회 산하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 회의는 그리스도의 참 복음에 의거한 한국적 상황에서 선교적 사명을 실천하는 (지역교회) 청년공동체를 지향한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구성)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당회에서 선임된 자로 구성한다.

제 5 조 (자격)

1. 정회원 : 본 교회에 출석하는 미혼남녀로서 고등학교 연령으로부터 8년 차 이상(만 26세)에 해당하는 자로 본 회에 등록 후 소정의 등반 과정을 이수한 자.(단, 임원회에서 인정한자도 포함한다.)
2. 준회원 : 본 회에 등록 후 등반 과정에 있는 자.(단, 경우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인정된 자를 포함할 수 있다.)

제 6 조 (권리)

1. 정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준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을 가지며, 비회원도 의장의 승인 하에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3.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따라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원하는 팀 (Team)에서 활동할 수 있다.

제 7 조 (의무)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장 집 회

제 8 조 (정기집회) 본 회의는 매 주일 정기집회를 갖는다.

제 9 조 (정기총회)

1. 매년 12월 중에 갖는다. 단, 12월 중에 소집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2주일 내로 소집해야 한다.
2.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제 10 조 (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재적 정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발의할

- 때 소집되며, 회장은 임시 총회 이전 1주 전에 소집을 공고해야 한다.
2. 임시총회의 개최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제 4 장 임원 및 임원회

제 11 조 (자격) 모든 임원은 정회원이어야 하며, 세례교인이어야 한다.

제 12 조 (임무와 권한)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한다.
2. 회장은 본 회의 회칙에 의거한 모든 집회의 의장이 된다.
3. 회장은 임원회의 결의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회장, 부회장은 총무, 회계, 서기를 임명하며, 필요에 따라 임원은 임명할 수 있다.
5.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나 공석 시에 회장 선출 시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단 회장의 장기간 공석시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6. 총무는 본 회의 모든 사업을 총괄한다.
7. 서기는 본 회의 모든 기록과 문서를 담당한다.
8. 회계는 본 회의 재정의 출납을 담당한다.

제 13 조 (임기)

1. 임원 임기는 정기총회부터 다음 회기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단, 정기총회 후 4주간은 인수인계 기간으로 한다.)
2. 임원 및 팀장은 연임하거나 재임할 수 있다.

제 14 조 (임원회)

1.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과 총무, 서기, 회계로 구성되며 회장이 의견조정권을 가진다.(단, 지도로 담당교역자와 부장을 포함한다.)
2. 임원회는 정기임원회와 임시임원회로 구성되며, 정기임원회는 매월 1회 개최되며 사업계획 및 보고에 대한 것을 논의한다. 또한 임시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 5 장 팀 활동

제 15 조 (팀장의 자격) 청년부 정회원 및 후암교회 내 청년 사역에 관심과 비전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 16 조 (선임) 팀(Team)장은 팀 구성원들의 추천을 얻어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7 조 (구성원의 자격) 청년부 회원 및 후암교회 내의 관심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 18 조 (구성) 청년부 내에 다음과 같은 팀을 둘 수 있다.

(단, 팀의 구성과 관리(구성은) 임원회의 결정으로 한다.)

1. 찬양팀 : 주일 예배 찬양 인도와 집회 및 행사 시 찬양 인도를 주관한다.
2. 미디어팀 : Homepage와 각종 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한다.
3. 새가족팀 : 청년부에 오는 새가족을 사랑으로 섬기며 신입반 과정을 주관한다.
4. 문서선교팀 : 주일 후보, 문집 발간, 각종 행사에 필요한 초청장 및 문서 제작을 담당한다. 또한 수련회 안내책자, 현수막 등도 제작·관리한다.

5. 선교팀 : 선교에 대한 소망을 전하고 선교 기도를 주관한다.
6. 중보기도팀 : 청년부 내의 기도 사역을 주도하고 중보기도 모임을 인도한다.
7. FC예람 : 축구를 통해 서로 연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청년공동체를 지향한다.

제 6 장 순장 및 성경공부

- 제 19 조 (자격) 본 회의 순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친 정회원 이어야하며 세례 교인이어야 한다.
- 제 20 조 (선임) 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한다.
- 제 21 조 (활동기간) 순장은 선임된 날로부터 그 임무를 수행하며 일신상의 이유로 활동할 수 없을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 제 22 조 (연임) 순장은 연임이 가능하며 이는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 23 조 (소그룹)
1. 명칭 : 본 회의 소그룹은 '순'이라 칭한다.
 2. 구성 : '순'은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3. 내용 : 순모임은 본 회의 기초양육 과정으로, 우리의 삶의 원칙들을 찾으며, 지체들 간에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4. 준회원은 등반 과정을 이수한 이후에 순에 합류한다.

제 7 장 선 거

- 제 24 조 (추천) 회장 및 부회장의 후보는 3인 이상의 추천(추천, 동의, 재청)으로 하며 투표 전 본인의 의사를 듣는다.
- 제 25 조 (투표방식)
1. 1인 이상의 입후보자를 추천받는다.
 2.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지지를 받아 선출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이상을 얻지 못했을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한다. 2차 투표에서는 최다득표자가 선출된다. 2차 투표시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3차 투표를 실시하며 3차 투표시에도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한다.
- 제 26 조 (보궐선거) 회장과 부회장의 유고시 결원확정 후 2주 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선거를 실시하며, 규정은 전 항에 의거한다.
- 제 27 조 (추천인 및 취임) 총회를 통해 선출된 회장, 부회장은 당회의 추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 8 장 재 정

- 제 28 조 (재원) 본 회의 재정의 재원은 현금, 회비, 교육위원회 예산 및 찬조금이다.
(단, 청년 1,2부에 현금은 반분한다.)
- 제 29 조 (집행) 재정의 집행은 임원회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30 조 (회계 연도) 1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11월은 신입원과 구임원의 인수인계 하는 달로 삼는다.)

부 칙

제 1 조 재적은 임원회의 결의로 한다.

제 2 조 본 회는 당회에서 선임된 자를 간사로 둘 수 있다.

제 3 조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4 조 (기타) 본 회의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교회규정과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 5 조 본 회칙의 효력은 총회에서 통과 즉시 발생한다.

재 정 : 1975. 12

1차 개정 : 1979. 12

2차 개정 : 1983. 12

3차 개정 : 1984. 10

4차 개정 : 1985. 11

5차 개정 : 1989. 3

6차 개정 : 1990. 11

7차 개정 : 1991. 11

8차 개정 : 1993. 11

9차 개정 : 1994. 8

10차 개정 : 1997. 11

11차 개정 : 1998. 11

12차 개정 : 2003. 11

13차 개정 : 2004. 11

14차 개정 : 2006. 11

15차 개정 : 2007. 12

16차 개정 : 2008. 12

17차 개정 : 2009. 11

18차 개정 : 2011. 12

19차 개정 : 2013. 12

20차 개정 : 2014. 12

21차 개정 : 2015. 12